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1665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소3033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43,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1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8,743,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2011. 10. 27.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변경 및 예비적 청구 추가를 하였다).

제2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818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8,743,740원을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1. 19. C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 19.,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면서, B이 공유자로서 1/2 지분을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1

유하고 있는 [redacted]시 [redacted]구 D 임야 3,3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E 임야 66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같은 날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접수 제8459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redacted]공사가 시행하는 영동고속도로 [redacted]나들목 인근 부가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수용되게 되었고, F 임야 3,1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D 임야 2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C은 2010. 8. 31.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권 1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0타채11082호로 B의 [redacted]공사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청구권 224,969,500원(= 이 사건 제1토지 중 B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211,204,000원 + 이 사건 제2토지 중 B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13,765,500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9. 2. [redacted]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9. 17.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액 213,109,600원, 수용 개시일 2010. 11. 10.로 정하여 수용재결 하였으나, 이 사건 제2토지는 수용에서 제외하였다.

마. [redacted]공사는 B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2010. 11. 8. [redacted]지방법원 2010년 금제 16293호로 213,109,600원을 공탁하였고, C은 2011. 1. 14. [redacted]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113,416,397원을 배당받았다.

바. B은 2011. 5. 1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며, 중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1

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9. 2.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13,889,700원, 수용시기 2011. 10. 26.로 정하여 수용재결 하였다.

사. 피고는 2011. 9. 15., 대한민국([redacted]세무서)은 2011. 9. 19. 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며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redacted]공사로부터 피고는 2011. 10. 26. 8,743,740원, 대한민국([redacted]세무서)은 5,145,9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아. C은 피고에게 위 8,743,74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1. 이를 거절하였고, C은 2011. 11. 21.[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1타채18183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2011. 11. 29.자 결정문이 2011. 11. 30. 제3채무자인 [redacted]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자. 원고가 2013. 2. 25.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인 이 사건 차용금채권 120,000,000원 중 미지급 부분을 양수하였고, C은 2013. 3. 12.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1. 1. 14.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 원리금 191,842,191원(= 원금 120,000,000원 + 2006. 1. 19부터 2011. 1. 14.까지 연 12%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71,842,191원)의 변제로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B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배당절차에서 113,416,397원을 배당받아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 원금 78,425,794원이 남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1

되었다.

한편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로서 이 사건 제2토지 중 B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10. 26. 법률상 원인 없이 8,743,740원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C은 2011. 11. 20.경 피고가 부당이득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C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B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비록 이 사건 제2토지가 수용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담보권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C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여전히 효력이 있어, C은 이 사건 제2토지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2011. 10. 26.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액수는 피고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C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8,743,740원을 법률상 원인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1

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8,743,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C은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갈음하여 B의 [redacted]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압류·추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C의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여 8,743,740원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인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설정등기가 말소된 근저당권에 갈음하여 C이 보유하게 된 위와 같은 권리 즉,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743,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구 E 임야 663㎡를 공동 담보로 설정된 공동 근저당권인데, C은 위 E 임야 663㎡ 수용보상금 대한 배당절차에서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아 이 사건 차용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redacted]공사가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redacted]공사가 2007. 6. 12. [redacted]지방법원 2007년 금제5409호로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E 임야 663㎡에 대한 수용보상금 63,067,87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공탁 사실만으로 C이 위 공탁금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1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의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제1 예비적 청구는 아래 5.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위 2011. 11. 29.자 2011타채18183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할 것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나. 신청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담보권자로 하여금 토지 수용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도록 요구하고, 압류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자로서의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부동산 경매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토지 수용보상금의 경우에만 압류할 것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1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가 수용에서 제외되더라도 C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43,740원과 이에 대하여 C이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 이후인 2011. 1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최용호

판사 손성희

판사 박상권